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2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74)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8)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1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1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1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1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2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21.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2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2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29.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

상정된 안건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5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5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5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1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1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12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12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12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12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74)	12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8)	12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12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12
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12
1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12
1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12
1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12
1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12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13
2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13
21.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13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13
2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13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13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13
2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13
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13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13
29.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13

○**소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정무위원회로 보임되고 또 법안2소위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부담감을 안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든 시간 국민과 또 상업 질서와 공정한 시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인사가 참 많네요.

허영 위원님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위원장님, 신임 차관님도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강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강준현 간사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강윤진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전유공자법도 올라와 있지만 국가유공자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

별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간 보훈부에서 쌓았던 경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14시17분)

○소위원장 강민국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보훈 제1항~제3항,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개요도 생략하겠습니다.

2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입니다.

각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배우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급자격을 80세 이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연간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 개정안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정의 및 적용대상자입니다.

정희용 의원안은 제2조(정의)에서 배우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안과 김성원 의원안은 제6조의3(생계지원금) 규정에서 배우자 정의 규정을 두고 마찬가지로 정희용 의원안과 같이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병덕·김성원 의원안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확대 시마다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배우자 정의 규정을 두는 정희용 의원안이 입법 경제적으로 보다 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수급자격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할지의 여부입니다. 각 개정안은 배우자 수급자격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현재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수급자격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행일은 세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 법 시행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 여부입니다. 각 개정안 모두 이 법 시행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례를 두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법 적용 배제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세 개정안 모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법 적용 배제 행위를 한 경우부터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참전유공자의 순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법 적용 배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우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본 법률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사망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령이 현재는 제한이 없는데 참전유공자에게 맞춘다거나 또 재정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그 연령 제한도 80세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법안소위원회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어쨌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계지원금이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말로 이 참전유공자의 남은 배우자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 10만 원 푼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소비쿠폰이 얼마예요? 일반 국민한테 15만 원 주잖아요. 월 10만 원, 물론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한테 그 영예를 기리고 그 예우를 다한다 말은 하면서도 다른 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박하게 지원되거든요. 저는 보훈부에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법안을 냈더니 그게 소요 예산이 몇천억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00억 들어가더라고요, 70% 정도 하니까 50% 하면 그것보다도 적고요.

그러면 지금 80세 이상 같으면 여명을 90세로 잡으면 한 10년입니다. 10년이면 전부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3조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예산이 650조 되는 예산입니다. 나라 지켜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 줍니까, 우리가? 이 10만 원 가지고 뭘 써요. 지금 냉면 한 그릇에 1만 5000원, 1만 6000원 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냉면 한 두 그릇 먹으면 없어지는 이 돈 주고 생색낸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짤끔짬끔 주는 돈은 돈만 없어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재정적인 것을 고민해서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해 주자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존경하지만 저는 보훈부에서 이런 의안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차관님, 말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 법에는 실은 연령만 나와 있고 그 금액에 대한 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 그 전에 충분히 읽어 봤고 재정당국과 좀 더 협의해서 일단은 10만 원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하되 점점 늘려 나가는 방향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계 문제는 제가 전향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유영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있다는 거지요, 10만 원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10만 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정책 기조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드려야 된다 그런 기조하에서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한번 추계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다음 국감 전까지 좀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이 법안 내용을 보면서 ‘10만 원 주면서 정말 이것저것 따지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배우자에게 준다 그리고 소급 적용한다, 소급 적용한다는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나이는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해서 본인이 80세기 때문에 배우자도 80세로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우리가 75세 또는 70세 이렇게 좀 줄여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들에 따를 때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75세라면 배우자도 75세로 줄이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야지, 저는 지금 배우자 80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세요, 본인이 75세로 줄여지면 배우자도 줄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 법에 본인과 배우자가 1조, 2조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아까 연령대를, 지금 1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20억 그다음에 늘려 나갈 때 10억씩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더 낮추면 30억, 40억 이렇게 10억씩 늘어나는 개념인데 제가 자세한 건 설명을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그렇게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저는 수급연령과 관련해서.....

지금 배우자도 80세 이상으로 제한했으면 하는 게 입장이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참전유공자와 맞추고 또 재정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이정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80세고 부인이 78세 정도라고 했을 때 돌아가시면 2년 동안은 이 법이 적용돼도 못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지금 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론 재혼을 했다거나 해서 나이 차가 클 수도 있지만 보통 한두 살, 두세 살 차이가..... 여성분이 더 적을 경우에 그동안 참전유공자분께서 받던 10만 원이라는 돈을 배우자가 80세 될 때까지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현재 80세 미만에서 받는 비율하고 80세 이상에서 수급하는 비율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 이승우**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로 나뉩니다.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다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유공자는 현재 평균 연령이 78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도 다 70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을 가장 취약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생계지원금 승계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수차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80세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통과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연

령 제한을 하고 금액 자체는 우리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금액을 상향하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몇 명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배제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법의 취지고, 금액이 아까 유영하 위원님 말씀처럼 10만 원도 적은데 거기다가 연령 제한을 둬 가지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요.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서 법을 만들면 예산 당국은 그것에 따라서…… 이게 더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추계한 걸로는 연령 제한을 다 철폐했을 경우에 있어서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정 부담은 재정 당국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이 잠깐 보완말씀 드리면 이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참전유공자 외에 5·18 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도 계신데 그분들도 배우자가 80세로 되고 있어서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아마 보훈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강민국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그거 연령 제한 철폐했을 때하고 75세로 했을 때하고 돈 얼마씩 얼마씩 더 들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금 현재 80세일 때 한 200억이고 75세는 230억 그다음에 제한 없으면 250억,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 것은 본인들로 하면 이 비중이 훨씬 커지는데 배우자만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더 든다고 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연령 제한 철폐하면 50억 더 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이양수 위원 201억 드는 게 250억 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 10만 원 했을 때고 20만 원 하면 이것의 2배가 되는 거고, 인원 수는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양수 위원 아까 이정문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예산 당국한테 관철을 못 시키고 예산 당국 평계 대면 그 자리에 뭐 하러들 앉아 있어요, 집에 가야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여기 위원들 앞에서 하시고 그래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민국 예,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오늘 처음 출석하셔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거

거든요. 만약에, 이게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로 한정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짜리는 차상위 바로 위의 계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텁게 국가가 보호해야 될 계층인데 그런 분들한테 연령 제한까지 5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산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 법안을 보고 걱정하는 것은 생계지원금이 통과돼서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만 원을 주든 시행령을 고쳐서 15만 원을 주든 그 적은 금액을 주면서 보훈 당국에서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나 보훈부에서 그런 걱정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6·25 때는 좀 다릅니다. 6·25는, 집안 얘기하자면 저희 선친도 제가 열일곱 살 때 학도 의용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으셨는데 제가 검사 시절 훈장을 찾아 드렸을 때 그때 무공수당이 9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가서 4년간 군대 복무시키고 그 포탄이 쏟아지는 데서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9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 이하 같으면 생계가 되게 불안정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1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보훈부가 손을 털고 나면 그건 누가 보호하겠어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냈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보훈부가 왜 있는 겁니까? 차관님, 보훈의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보상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위원님 말씀……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기조 아니겠어요? 가장 큰 희생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시거나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아무 군말 없이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그것에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인 대책을……

이 법안은 통과되면 저는 보훈부가 손 놓을 것 같아요. 시행령 고쳐서 15만 원 더 주고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뭐 그리고 평계는 다른…… 형평성? 여러분 형평성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참전유공자하고 민주화유공자하고 보상이 똑같아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훈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발의했을 때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해서 정부 입법으로 들어와도 저는 된다고 봐요. 80세 넘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없는 분들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50만 원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말이 맞아요. 다른 법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조금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대우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똑같이 대우하려고 그래요. 50만 원 때문에? 50억이지요, 50억. 연 50억 때문에 그렇게 박하게 구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시행령을 하실 때, 물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세요. 그래야지 맨날 기재부만 따라가서…… 거기에

보훈부 왜 있습니까?

○소위원장 강민국 다 질의하셨어요?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신장식 위원님, 질의할 거 없어요?

○신장식 위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그간 참전유공자분과 배우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까 유영하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의 평균연령이 벌써 87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위원님께서는 추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논의할 거고 또 의원님께서 내 주신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계속 늦어짐으로써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법안을 빨리 속히 통과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심사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일단 오늘은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민병덕 위원님, 대표발의인데 괜찮나요?

○민병덕 위원 예,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장 강민국 이거 가액 상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한 번도 틀린 게 없어요.

정부 측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강민국 50억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돈도 아니잖아요. 50억이 아니고 500억이라도 드려야지. 그렇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 오늘 첫 데뷔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소위원장 강민국 인사말씀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인사말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설명드리는 첫 기회를 갖게 되어서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 하시는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있고 위원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1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1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1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1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3)
2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21.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2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2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29.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14시39분)

○**소위원장 강민국**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의 목차 페이지 잠깐 보시면 독점규제법하고 하도급법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무협의·종결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관련되는 게 3건이 있고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협의·종결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관련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협의·종결처리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무협의·종결처리 결정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무협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고인은 공정위에 해

당 사건을 재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현행처럼 재신고를 하면 심사관의 검토보고서 제출 후에 재신고사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하면 심판관리관 심사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재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96조의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처분을 다투기 위한 불복 절차이므로 신고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입법화한다면 신고인에게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에도 준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공정위 입장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혐의나 종결처리에 대한 법적 성격이 처분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의신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무혐의나 각하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개시율이 한 2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검찰의 항고 인용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더 재조사 개시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신고인 권리 강화를 위해서 재신고나 이의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게 전체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그런 경우에 실무단에서는 신규 보좌 인력이라든가 상임위원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무혐의·종결처리로 종료되는 사건이 현재 연간 한 670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 인력이 추가 확충되지 않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법안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에 재항고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소위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통칭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거기에 이의신청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 결정이 됐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 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의신청하는거나 재신고하는 절차를 이렇게 죽 도표로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1년에 한 670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공정위가 조사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큰 오류만 없으면, 그다음에 670건 정도 되는 것을 이의신청해서 재검토 한 번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규는 공정위에서 마련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의신청을 어떤 기관, 어떤 담당 부서에서 할 건지도 공정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원처분을 결정한 사람한테 다시 그걸 이의신청을 배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정위에서 크게 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도 그렇게 문제가, 공정위 업무에 크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공정위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물론 신고행위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를 좀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권리보호나 이런 것, 공정위 심결도 한 번 더 따져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가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여기의 690건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숫자고요. 최근에 그나마 공정위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증원한 인력 가지고 저희가 사건 처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또다시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증원의 여력을 자칫 이런 쪽에 또…… 물론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는 것의 자원을 자칫 소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1년에 재신고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9년부터 평균 내 보면 한 71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신고 자체는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柳榮夏 위원** 이게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아마 답변도 가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690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만약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면 이의신청되는 확률이, 690건 전체가 다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마 신고 중에 각하할 정도의 내용, 터무니없는 것도 있을 거고요.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검찰 경험을 보면 고소 고발이 있는데 그냥 고소장 자체로 각하되는 건수가 많고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첨예하게 다투어 가지고 무혐의 처분됐을 때 항고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도 이 690건 중에서 이의신청까지 다뤄서 하는 것은 그렇게 확률상, 아직 제대로

운영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100%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신고하는 게 한 70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10%면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신고보다는 한 번 신고된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해서 기각하는 게 인력 운영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요약돼서 집약된 텍스트를 보고 결정하는 게 더 신속하고 빠를 수 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즉답으로 저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하시겠지만 한번…… 저희가 오늘 이걸 통과를 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법안을 낸 게 있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막연하게 자꾸 이것을 다른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신고자가 터무니없는 신고자도 있겠지만 정말로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두는 것도 일종은 팬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재신고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재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신고 절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하듯이 신고하면, 한 번 다루었던 사건들을 다시 또 신고하시면 제기가 되고요.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신고사건 처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크게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법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신고라는 것은 저희 조사의 직권 발동을 위한 단서에 불과하다는 게 그 신고의 법적 성격이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위낙에 신고 건을 많이 처리하면서, 그럼에도 굉장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니까 신고인들도 공정위 사건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위낙에 숫자가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중에는 좀 부실하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왔던 사건들을 인력의 여력을 가지고 조금 더 신속하게 하면서도 내실 있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다시 불복을 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이후에 고민을 하는 게, 저희는 그게 조금 더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인력이 그리 많이 필요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공정위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일단 그런 제도적 절차가 좀 열려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670건 이렇게 오는 숫자가 실제로 저희가 막상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시에 조사했던 같은 조사관이 재신고 심사를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허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재신고는 같은 조사관이 재신고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른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체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또한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그런 이의신청…… 법상의 처분성이 없으니까 이의신청 절차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안전의 한 20% 정도는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판단한 원 부서가 또다시 판단하는 경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건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더 객관적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셔야 이 법의 필요성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허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개선들을 완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허영 위원** 제가 봐도 재신고를 했는데 같은 조사관이 재신고에 대해서 또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실 판단하는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을 상정을 해서 재심사사건심사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원심결하고는 다른 분들이 다 다루고 있어서……

○**허영 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했던 조사관이 재심사해도…… 안 한다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죄송한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가 있는데요. 21조가 재신고의 경우인데 그 7항에 보면 재신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부서는 같은데 담당자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영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규정상 다른 공무원이……

○**허영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아마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같 은데……

○**허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가 생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제기해 가지고 지금 개정 안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민병덕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강민국** 예,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이게 지금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있는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 을 내리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신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것, 그것이 무혐의나 종결처리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재신고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신고인과 피신고인 여기에서 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 고인은 대체로 을들이 많을 거고 피인고인은 갑들이 많을 건데 갑에게 불리한 처분……

○**신장식 위원** 그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민병덕 위원** 이의신청이 되고 을에게 불리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안 되는, 균형이 안 맞다라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 인력을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대폭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해소되게 하자, 그래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경제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어서 큰 취지에서 봐서는 신고인 에게도 피신고인에게도 균형 잡히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명분상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말씀 취지는 100% 동감을 하고요. 또 저희 실무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신고는 법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인의 지위하고 공정위가 본격 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루는 피신고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호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위 입장에서도 신고인에 대해서 무혐의·종결처리할 때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라고 할 때 저희가 다른 심급에서 한 번 더 봤는데 또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신고인 입장에서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실은 신고인들 경우도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신고인들이 절박한 마음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사건을 다뤄 주기를 요청하셨을 겁니다. 공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틀림없이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한 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신고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알려 주는 과정,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낙에 사건 수나 대비했을 때 다 똑같이 하나같이 저희가 전심을 다 써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틀림없이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것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하시는 신고의 법적 성격이나 처분성이 필요한 이의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공정위 논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김근성 심판관리관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왼쪽에는 누구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저는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하도급법 담당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10조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9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13페이지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첫째 기록의 송부 부분인데요.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하 의원님께서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라 다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로 수정이고요.

다음에 ‘해당 사건의 기록’ 해서 괄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강준현 의원님께서는 속기록 이외에도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시 8페이지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기록에 대한 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함으로써 법원의 자료제출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 손해

회복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의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의 대상을 현행처럼 사건의 기록에 한정하되 그 범위를 다소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강준현 의원님안 111조에 보시면—다음에 논의할 내용인데요—‘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개정안에서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을 110조에서도 포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영하 의원입니다.

현행 사건의 기록보다 넓은 ‘자료’로 규정하면서 몇 가지 보충을 하고 계신데요. 자료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심리를 하도록 하면서 열람의 범위와 사람의 제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의 완화와 소송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익의 균형을 고려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입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유영하 의원안 제110조제1항은 법원이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당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유영하 의원안 제110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자료제출할 때 먼저 처분을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의견입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인데요. 현행 기록송부제도는 법원이 필요하면 해당 사건 기록을 송부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영하 의원안은 보충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에 비밀유지명령 신청 주체의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인데 비밀유지명령 신청 주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개념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상대방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비밀엄수 의무 적용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적으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나 영업비밀보호 장치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추가적인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준현 의원님 안과 같이 위반행위 증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기록을 자료제출명령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출 시점을 공정위 처분 이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를 대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해석을 봐도 국가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주체는 유영하 의원안과 같이 이해관계인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위 규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임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제 법안하고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법안하고 합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정의견들이 일응 보니까 저희가 법안 제출했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정부 측 의견하고 대법원 의견 보면 조금 수정해야 될 여지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시면, 나중에 대안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柳榮夏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소위원장 강민국 공정위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柳榮夏 위원 할 때 다시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문구 좀 만들면 되니까……

○소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柳榮夏 위원 법원의 입장을 일부 조금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병덕 위원 제가 그러면……

○소위원장 강민국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그 밑의 동그라미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먼저 처분을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러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기 전에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처분 후에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일웅 처분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심리를 안 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법원이 꼭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서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이 꼭 공정위의 처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민병덕 위원 그런데 이 법원이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기소해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고 억울한 신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신고인 입장에서 —그리면 원고겠지요—자기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 여기서 처분이니까 또 불송치는.....

무혐의·종결처리한 것은 처분이 아니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더 발견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종결처리한 기록은 법원에서 자료 요구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그 위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무혐의하거나 종결처리한 그런 자료가 반드시 원고나 민원인에게 유리한 자료일까 그 것은 좀.....

○민병덕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물론 그렇기는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제도는 기존에 있던 문서 제출이라든가 기존에 법정에서 공방하는 그런 절차 플러스 가능하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민원인이나 당사자들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민병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처분이 아닌 무혐의·종결처리된 것이든 그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김근성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종전에 공정위가 처분을 하고 나서도 자료 협조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에, 제도적 제약 때문에 못 하는 보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래에 처분을 하고서도 협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라는 기본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가 설계된 거고요.

전방위적으로 당사자·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공정위가 당사자에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모양은 두지 않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위는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정위는 공정위의 입장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것을 조사해 놓은 그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청구하고 불리하면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예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는 이유는 그런 부족함을 그나마 현행 체계에서……

○**민병덕 위원** 아니, 하는데 왜 그나마 조금만 하냐고요. 하려면 신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위가 확보한, 예산 들여서 조사한 자료 주면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김근성**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신고인, 피해기업이하게 되는데 피해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당연히 100% 될 거라고 예상을 저희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일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해서 중소기업자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내서, 조사 중인 과정의 자료까지 받아 내서 여러 가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진술 오염이라든지 조사 방해 우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병덕 위원** 완전히 갑인 대기업이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 경우를 방어하는 것을 찾아야지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신고인이고 신고인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제출요구권이 아니라 명령권으로 바꿔서 그 대상도 넓히고, 다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들만 좀 최소한으로 막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처분을 한 자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이 제도를 두고 고민을 할 때 사실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을 많이 열어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고민을 했고요.

다만 모든 제도가 부작용이 반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자꾸 말이 길어져서, 제가 제 법안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109조가 뭐예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 110조가 그런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 지금까지 송부요구권을 제출명령권으로 강화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틀립니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이지 공정위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가 대기업을……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대안 마련할 때 공정위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자도 오시라 그래서 설명하고 빼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뒤에 실무자들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걸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안이 바뀌어졌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 법안이 발의됐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왜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리고 궁금하시면 법안 발의한 의원한테 가서 ‘왜 이 조항을 꼭 넣으셨습니까? 저희는 이런 의견……’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앉아서

이렇게 정말 말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마련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왜 이 조항을 이렇게 넣었는지 그리고 왜 공정위에서 처분 후에 제출해 달라는 게 합리적이 아닌지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뒤에 실무자들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우선 이 부분은 대안 마련할 때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공정위 처분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증명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더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처분을 한 후’를 더하는 것은 빼고, 유영하 위원님 안대로.

○**허영 위원** 공정위가 처분 후에 자료 제출하고 그거는 빤다라는 말씀이시지요?

○**柳榮夏 위원** 예.

○**소위원장 강민국** 수석,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조문대비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 현행을 보시면 법원은 ‘40조, 45조, 51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영하 의원안은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침해’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안입니다.

제111조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강준현 의원님께서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약간 자구 수정이 있는데 현행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필요한데요 ‘침해’라는 용어 대신에 ‘위반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유영하 의원안입니다.

현행 제111조는 세 가지 사안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용이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강준현 의원님 안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다만 용어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수정하는 데 의견이 있고요. 유영하 위원님 안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범위·대상 확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문대비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법 제110조, 115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유영하 의원안은 110조부터 115조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35조의2(자료의 제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손해의 증명 부분은 위반사실, 기술자료 침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료제출명령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35조의2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인데 강준현 의원안은 자료제출의 범위에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손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유영하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하도급법이 준용하고 그래서 공정거래법령 체계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입법취지나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하도급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고요. 유영하 의원님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 포함해서 앞서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 설계하는 대로 하도급법이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9페이지입니다.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관련된 강준현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는 현행 제22조 4항에서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신고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신고접수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고일은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건을 신고한 날을 의미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날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변경하는 것은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절차 이관 시 처분시효 기산점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였으나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처분시효 도과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는 60일에 불과하여 처분시효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때는 잔여 처분시효를 고려하여 그 의뢰를 결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준현 의원님 안 중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 이관 후에 기산점을 다시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일단 왜 신중해야 된다는 건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다가 분쟁조정절차로 옮겨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왔을 때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면 그게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려하시는 조사 장기화에 따른 시효 임박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문위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쟁조정 기간이 한 60~90일 정도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큰 우려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남근 위원 일단 실무를 보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60일은 그냥 훈시 규정이고 분쟁조정 자체가 6개월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조사 기간이다 도과해 버릴…… 조사 기간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의 조사도 못 해 보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 기간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분쟁조정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柳榮夏 위원** 이거는 약간 빼야 될 것 같은데……

○**김남근 위원**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분쟁조정하다 오는 사건들도 있어요. 갔다 오면 또 사건도 다 잊어먹어지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래서…… 분쟁조정 기간이 그렇게 60일만 되지 않아요, 길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시효가 시작하는 경우가 지금 문제라 그러시니까 그러면 다시 시효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쟁조정 절차를 갖던 기간 만큼만 제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분 조항이 남게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시효 중단……

○**김남근 위원** 중단을 해도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시효 중지 같은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근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한 번 좀 해서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처분 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장한테 얘기해야지……

○**김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문위원을 보니까……

수정의견으로 분쟁조정 기간 동안은 시효를 중단한다고.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소위원장 강민국** 수석님,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부칙입니다.

자료 44페이지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안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개정안과 관련되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위원님들 이것 다루실 때 절차나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더 하위 규정에 두어야 할 것들은 위임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행령이나 하위 절차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검토해 줄 수 있지요.

○**민병덕 위원** 유영하 의원님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柳榮夏 위원** 저는 좀 세게 했지요. 그런데 약간 유예기간 둘 수는 있다고 봐요. 6개월 정도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민국** 6개월?

○**柳榮夏 위원** 예.

○**柳榮夏 위원** 강준현 위원님, 대안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강준현 위원** 예.

○**소위원장 강민국** 대안으로 남겨 두고, 위원회 대안으로 넣으세요.

끌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예.

○**허영 위원** 지금까지 심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일부 문구 수정에 대한 대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금지청구 도입에 관한 부분들을 심사하고 그 문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문구 제안을 받아서 최종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우리 지금 8항부터 9항까지 할 거지 않습니까? 하고, 아까 우리 법안 심사하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다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강민국** 공정위의 의견은 그냥 의견에 불과한 거고 참고인 거지, 우리가 공정위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원래 법안소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허영 위원** 그런데 일부 이의신청 부분들과 처분 시 자료제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정위와 여당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문구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참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이상 2건의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제도는 202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상 제재는 조사·심의 또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지청구는 신속한 구제와 피해의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도입하면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즉 작위의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현정 의원안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금지청구와 함께 법원이 원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동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안은 금지청구 대상을 모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처럼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폭넓은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작위의무 규제를 넓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지청구권은 김상훈 의원안처럼 기술유용 금지에 대한 청구에 한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할법원 및 담보제공 관련해서 김현정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08조제2항은 금지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부칙, 시행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하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김상훈 의원님 안은 수정 수용, 김현정 의원님 안은 일부 수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 금지청구를 도입할 필요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술유용

뿐 아니라 김현정 의원님 안과 같이 조금 더, 하도급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도입을 하고 금지청구 대상이 존재하는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넓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건 등의 폐지청구권 도입에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기술유용 부분의 도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담보제공 명령이나 관할권 규정 준용 그리고 적용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현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법안소위원회원님들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업무가 아직 숙지가 안 된 거예요? 법안심사할 때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어서 봐요!

아니, 법안심사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법안 심사하고 있는데, 법안심사할 때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국장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대안으로 더 한단 말이에요? 앞에 뭘 더 대안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참 위원님들 다 의견 말씀하시고 다 해 가지고……

법안심사하기싫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한 20분 나가 계실래요? 보니까 모 위원장도 그렇게 하더만. 나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법안심사할 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다시 와서 대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앉으세요.

○**柳榮夏 위원** 아마 브레이크 타임 때 공정위에서 우리 의원들 법안 발의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준현 위원님께서 아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됐고, 하나 남은 쟁점이 뭐냐 하면 공정위는 자료제출을 할 때 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냈던 원안은 그걸 없앴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분 전에 자료제출명령이 왔을 때 공정위의 조사는 하다가 그 조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조사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저는 일부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한 의미가 몰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의원, 물론 제가 낸 법안입니다. 그 원안을 살리고 거기에 시행령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법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지요. 그런 것 있으면 아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넘기기 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법안심사할 때 공정위에 미리 자료가 갔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께서 아마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저희 위원회안에서는 1안, 2안 정도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어렵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세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보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그냥 기존의 자기들 안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만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좀 답답했던 거고.

아까 제가 따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와서 그때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달리 얘기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것 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언짢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그겁니다. 처분 뒤에 송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예 없어지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원안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살렸으면 좋겠고, 그거를 만약에 다른 위임 규정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만약 오늘 이것을 대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저희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 갔을 때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이거는, 공정거래위는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준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발의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관련해서는 철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유영하 의원님 발의 법안인데 10페이지네요.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수정의견이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보완해서? 아니면 지금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안을 만들어서 금방 가능하냐는 얘기지. 이거 하나 때문에 법이 오늘 가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일단 위원님들 너무 번거롭게 해 드린 저의 미숙함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회의가 진행될 때 조금 더 적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처분을 한 후에'를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아까 유영하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 조사 협조 유인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제 필요한 자료의 징구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제도가 어쨌든지 전향적으로 도입되는, 사인 간의 민사소송에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첫 사례일 텐데 그런 점에서 아

까 말씀드린 조사 협조의 문제라든가 또 행정……

○**柳榮夏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원안 살리면서……

○**소위원장 강민국** 아니,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이상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강준현 위원** 그러시지요.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벌어 놓지요.

○**소위원장 강민국**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이상 2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이상 2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0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예.

○**이정문 위원** 저희가 오늘 심의 예정인 법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를 하려고 했던 법들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통상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현재 이 법들을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있으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의는 한미 통상 협상이 끝난 이후로 미뤄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장식 위원** 논의도 했고 공청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또 우리가, 물론 통상 현안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는 있으나 자례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미룰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가 논의한 수준만큼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나 공청회까지 했는데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 갈 수 있는 다른 대안 없이 그냥 무작정 뒤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끌어온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허탈, 허망하거든요.

이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지금 위낙 안도 방대해서 그 안에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한미 통상 상황을 좀 본 후에, 온라인 플랫폼

을 또 지금 나누자는 의견도 있고 다른 단일화 법안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의 자체를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다시 한번 의견드립니다.

○**신장식 위원**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뒤로 미룬다가 아니라 논의를 오늘도 계속한다라는 정도로 회의록에 남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 협상을 하는 쪽 입장에서도 하나의,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 나름의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논의를 오늘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 협상을 고려하여 통상 협상 이후로 논의를 넘긴다라고 회의록에 남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를 지속한다라는 정도로 남기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지금 신장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를 통상 협의에 대한 지렛대로 삼는 그런 여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 이 논의를 조금 뒤로 미루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법안이고 또 여기 관련된 법안들이 내용별로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당에서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좀 절충을 해서 공약 수를 뽑아서 오는 게 다음 심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심의를 하면요 계속 얘기가 첫바퀴 돌 듯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앞으로 좀 더 숙고해서 심의한다는 정도로 속기록에 남기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결론적으로는 제가 강준현 간사님하고 한 10분 정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이 14조를 벌어 갔는데 그게 소득이 있는데 가시화가 없어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국익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쟁

점별로 의견을 정리한 후에 논의를 이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10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장과……’ 이렇게 한 말씀을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정이나 자구정정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안 됩니다.

○이양수 위원 법상 삭제가 안 돼요. 한번 뺐으면 안 되고 재차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것만 올라가는 거지.

○민병덕 위원 그러면 했는데 다시 정정 발언을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강민국 이정문 위원님 정정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된 안이 저희 위원들도 여러 안들이 제출이 됐고 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법 등으로 발의가 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조정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우리 당 내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까 발언을 이 발언으로 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예, 위원장으로서 이정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소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 중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게 부족하다면, 또 다른 공정위 의견이 있다면 위원장한테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결례.

부위원장님, 마지막 경고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번거롭게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민병덕 신장식 유영하 이양수 이정문 허영

○출장 위원(1인)

이현승

○첨가 위원(1인)

김용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심판관리관 김근성